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3.3.(금)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3.3.3.(금) 11:00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책임자	팀 장 고재영 (043-719-7780)
		담당자	사무관 정우재 (043-719-9374)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등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 착수

주요 내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

○ 코로나19 중증화율·치명률 하락 등 방역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

○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 검사, 치료제 지원, 격리의무,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 전환**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세부 내용 확정, 추후 발표 예정**

□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계획

○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입원수요 감소** 및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 활용** 등을 고려하여

- 현재 확보된 **지정병상 3,880개**를 **3월 둘째 주부터**는 **약 1,000병상 수준으로 추가 감축하여** 운영할 예정

- **중등증 환자 입원수요**는 **자율입원이 가능한 14,485개 일반병상**(2.28. 기준)을 중심으로 지속 대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1.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20. 2. 23.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를 설치한 이래, **방역·의료 전 분야**에서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고 있다.

○ 지난 3여년 간의 **범부처 총력 대응** 결과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초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인 대응수준 향상**으로 **감당 가능한 유행 규모도 증대****되었다.

* 치명률 : (1차) 2.1% → (7차) 0.08%, 중증화율 : (1차) 3.76% → (7차) 0.17%

**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22년 여름철(일 최대 18.1만명 발생), 겨울철(일 최대 8.8만명 발생) 재유행 대응

○ 이에 정부는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3년**을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진 방안**]

□ 먼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절차)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며,

○ **(시기) 4월말~5월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여 **국내·외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효과)**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되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하여 **대응을 지속한다.**

□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특히, 그간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던 **전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한편,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하였다.

○ 현재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며,

○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향후 계획]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3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아울러, **일상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의 생활화와 **고위험군 보호**가 특히 더 중요한만큼,

○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분**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2.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부터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22.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 기반 조성**과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를 조정 해오고 있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6.5만 명**(12월 4주) ⇒ **2.1만명**(1월 4주) ⇒ **1.0만 명**(2월 4주), **병상 가동률**: **35.2%**(12월 4주) ⇒ **21.6%**(1월 4주) ⇒ **14.8%**(2월 4주)

< 병상운영 현황(3.2.) >

구분	계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전 국	**3,880**	**448**	**11.5%**	**1,045**	**138**	**13.2%**	**2,052**	**247**	**12.0%**	**783**	**63**	**8.0%**
수도권	2,200	250	11.4%	601	90	15.0%	1,241	148	11.9%	358	12	3.4%
비수도권	1,680	198	11.8%	444	48	10.8%	811	99	12.2%	425	51	12.0%

□ 이에 정부는 2월 6일에 지정병상을 1단계 감축(5,843병상 → 3,900병상)한 이후, 최근 유행 동향과 병상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현재 3,880병상을 **3월 둘째 주**부터 **약 1,0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중증·준중증)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 **(중등증)** 1월 1주 이후 이용률이 지속 감소 중인 **중등증 지정병상의 운영을 종료**하고, 2월 28일 기준 **자율입원이 가능한 전국 14,485개 일반병상**을 중심으로 **중등증 이하 환자 입원수요를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

○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신속·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안내(카드뉴스)
2. 「감염병 보도준칙」(2020.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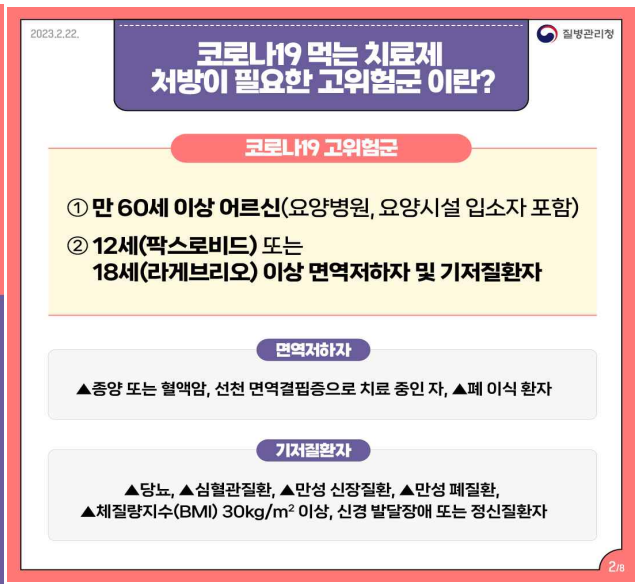
담당 부서 <총괄>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책임자	팀 장	고재영	043-719-7780
		담당자	사무관	정우재	043-719-9374
담당 부서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	책임자	팀 장	남점순	044-202-1731
		담당자	사무관	오상철	044-202-1721
담당 부서 <향후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책임자	팀 장	정통령	043-719-9050
		담당자	사무관	김영미	043-719-9350
담당 부서 <병상>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책임자	팀 장	이승묵	044-202-1850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044-202-1788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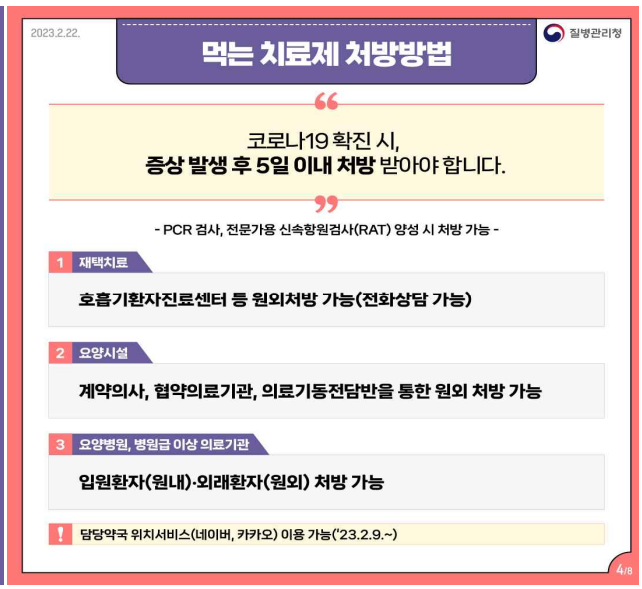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1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안내(카드뉴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2023.2.22. 질병관리청

처방 시, 의료진에 알려야 할 사항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 ☑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 ☑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 ☑ **수유 중**인 경우
- ☑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 팍스로비드 투여 불가 환자*에게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병용 금기 의약품 복용자, 신장애·간장애 환자, 삼킴 곤란 환자

5/8

2023.2.22. 질병관리청

복용 시, 유의사항

① 정제(캡슐)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킵니다.**

②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합니다.

③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진과 상의 없이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④ 치료제의 **복용을 잊은 경우,**
8시간(팍스로비드), **10시간**(라게브리오)이 **지났다면**
건너뛰고 정해진 시간에 다음 용량을 복용합니다.

⑤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6/8

2023.2.22. 질병관리청

부작용 발생 시, 상담/신고방법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 의심 증상시,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복용 중단·변경 필요성에 대해 상담받습니다.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작용 상담 · 신고 채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온라인 보고(신고) : kaers.drugsafe.or.kr
전화상담 : 1644-6223

팍스로비드(화이자제약) 문의처 : 1533-1900
라게브리오(MSD) 문의처 : 02-331-2000



7/8

2023.2.22. 질병관리청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 및 사망 예방에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 ☑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 진행(입원 및 사망)을 예방합니다.
- ☑ **확진 초기, 처방받는 즉시**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 ☑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되더라도
반드시 5일치를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



8/8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2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